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71000-100090-14

청렴  세상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2026.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 안내서 제 · 개정 점검표

명칭	알기 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이미 등록된 지침서 · 안내서 중 동일 · 유사한 내용의 지침서 · 안내서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상기 질문에 ‘예’ 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 · 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 · 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_____)	
	법령(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 · 훈령 · 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일회성 지시 · 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외국 규정을 단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 · 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 · 안내서 제 · 개정 절차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 · 안내서 구분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input type="checkbox"/> 예 (→지침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안내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타 확인사항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 · 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상기 질문에 ‘예’ 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 · 안내서 제 · 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p> <p>2026 년 2 월 9 일</p>		
담당자 확 인(부서장)		김 성 미 김 철 희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이 안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6년 2월 9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2211(식품등), 2215(식품등), 2231(수산물), 2221(축산물)

팩스번호 : 043-719-2200

CONTENTS

01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

- 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검사란? _ 08
- 2 수입식품등 검사절차 및 방법 _ 10
- 3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_ 11
- 4 검사명령제 _ 12
- 5 우수수입업소란? _ 13
- 6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_ 14
- 7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_ 15

02 수입신고서 작성

-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_ 18
- 2 UNI-PASS를 통한 신고서 작성 _ 19
- 3 수입신고서 구비서류 _ 34

03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 1 공통사항 _ 38
- 2 농산물 신고요령 _ 42
- 3 수산물 신고요령 _ 43
- 4 축산물 신고요령 _ 44
- 5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신고요령 _ 45
- 6 기구 및 용기·포장 신고요령 _ 47

04 수입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

- 1 수입신고 및 검사 _ 50
- 2 구비서류 _ 58
- 3 축산물 분야 _ 64
- 4 수산물 분야 _ 67
- 5 표시사항 _ 73

[부록1] 영업자 준수사항 _ 78

[부록2] 수입식품 검사부서 및 관할구역 _ 83

[부록3] 농산물 농약검사 항목 _ 86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01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

0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검사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 (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①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실사 ② 통관(수입)단계 검사(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③ 유통단계 수거·검사로 3중 안전관리 체계로 관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 수입시 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해외생산단계로부터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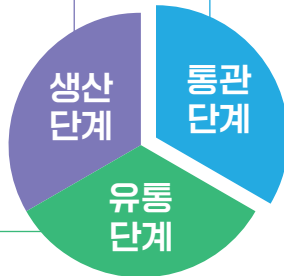
- 위해도 중심의 현지실사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 수산물 사전안전관리(위생약정)

수입식품 통관 관리강화

- 식품, 축산물, 수산물 통관검사
- 검사명령제
-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유통수입식품 안전관리

-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 수입업체 지도점검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 휴대반입품, 해외직구 안전관리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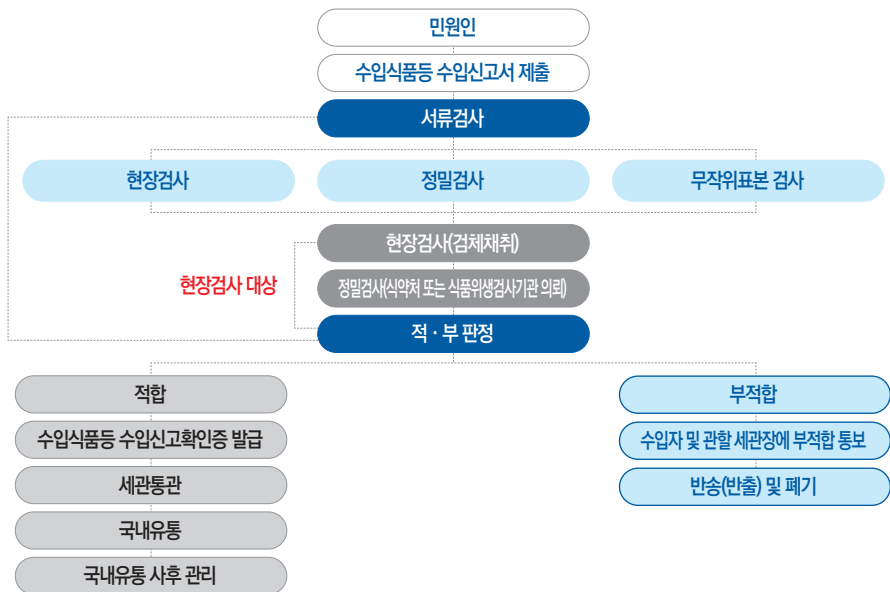
연번	내용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소의 제조·가공시설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비(非)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등 * 관세법 제239조제1호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약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사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5.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02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및 방법



1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2 수입식품등 검사종류 및 방법

검사종류	처리기한	검사방법
서류검사	2일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3일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정밀검사	10일 (축산물 : 14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5일 (축산물 : 14일)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하며, 이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서류검사(또는 현장검사) 대상에 해당

* 단, 무작위표본검사에 선정될 수 있으며, 기준 및 규격이 신설·강화되거나 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1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구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조건
식품 (농·임·수산물 제외)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식품첨가물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농·임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수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조국·해외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건강기능식품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료 및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원유·식용란 :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그 외의 축산물 :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

04 검사명령제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검사명령 대상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0) (1)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
-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수입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

* 자세한 검사명령 지정현황은 식약처 누리집(<https://www.mfds.go.kr>) → 알림 → 공지 참조

05

우수수입업소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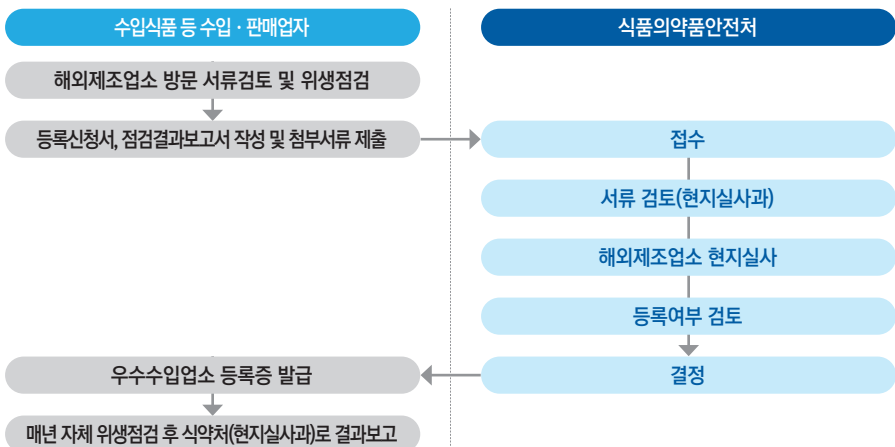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1 우수수입업소 우대조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 우수수입업소명, 등록 제품 등 누리집 공개
-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2 신청 절차



06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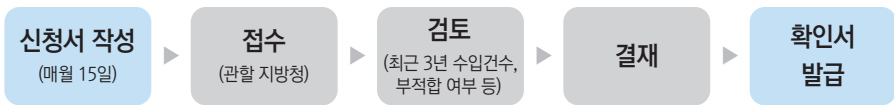
- 계획수입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계획수입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 신고 즉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단,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정밀검사 ·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건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

1 신청 대상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
- 식품제조가공업자(식품첨가물제조업자)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의
 - 가. 외화획득용원료
 - 나.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향료
 - 다. 정제·가공용 식품원료
 - 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수산물 제외)
 - 마. 국외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수입식품등

2 신청 절차



3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 계획수입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대상여부’를 ‘예’로 신고하여야 하며,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의 경우는 추가로 등록번호도 신고(입력)하여야 함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자년도 계획수입 신청 및 승인된 업소에 한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적인 사항은 신고기관에 문의)
*기능성표시일반식품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전자위생증명서발급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초기화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Q"/> 초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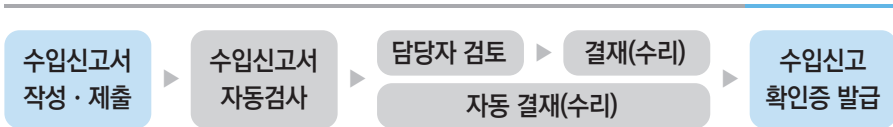
07

수입식품 전자심사24
[SAFE-i24]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시스템

- 수입식품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 결재과정 없이 자동으로 수리하는 심사체계

1 전자심사 절차



2 자동 수입신고 수리 적용대상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이고,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를 모두 만족하면 자동 수입신고 수리 적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 ※ 단,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한 경우 자동 수입신고 수리되지 않고, 수입식품 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 수행(기존의 서류검사 절차와 동일)

3 참고사항

수입식품전자심사24 관련 수입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세부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서 '알림자료 → 법령 및 제도 → 수입식품 전자심사24' 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
- 자동 수입신고 수리 이후, 수입신고 내용이 현품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02

수입신고서 작성

02

UNI-PASS를 통한 신고서 작성



UNI-PASS 신고서 작성 랩



UNI-PASS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품목 · 원재료 · 해외제조업소 등이 조회되지 않거나, 신고서 작성 후 오류통보가 발생하는 경우 ☎1811-6496으로 문의바랍니다.

1 기본사항

기본사항

*신고구분	본신고	*신고제품구분	농·임산물
*신고기관	...	연락처	...

신고번호 재발 이전에 신고제품구분을 변경하면 입력하신 모든 정보가 초기화 됩니다.
 신고번호 재발시에는 신고제품구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합 등록 후 인허가 정보(수입허위, 제조가공일자, 수입신고 대입일자, 수입신고 조회되지 않거나, 해외제조업소(해외직접입장, 수출장소, 포장장소) 등록 이후에도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811-6496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임산물 등록 시 국가 관할 지방청, 해외제조업소(해외직접입장, 수출장소, 포장장소) 등록은 현지전화(043-719-6206) 문의
 영합정보(수입허위, 제조가공일자, 수입신고 대입일자) 및 해외제조업소(해외직접입장, 수출장소, 포장장소) 정보(생로, 수조, 대포기통 등)가 시작처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없으며,
 오류류 발생 시 해당 정보를 다시 조회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와 밀접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증명서 서식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축산물 위생증명서 영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mfds.go.kr/brdm_563/first.do)

신고제품구분에 따른 입력항목(예)

- 농·임산물: 공통사항, 품목사항, 복합구성제품, 한글표시사항정보, 첨부파일 입력가능
- 수산물: 공통사항, 품목사항, 복합구성제품, 한글표시사항정보, 첨부파일 입력가능
- 축산물: 공통사항, 품목사항, 복합구성제품, 제조/가공공장, 성분/재질, 도축/가공장, 식육종류/부위, 한글표시사항정보, 첨부파일 입력가능 (제품유형에 따라 별도 입력항목(가연부위)가 달림)
- 가공식품: 공통사항, 품목사항, 복합구성제품, 제조/가공공장, 성분/재질, 한글표시사항정보, 첨부파일 입력가능
- 식용알갱이: 공통사항, 품목사항, 복합구성제품, 한글표시사항정보, 제조/가공공장, 성분/재질, 한글표시사항정보, 첨부파일 입력가능
- 기구 또는 용기/포장: 공통사항, 품목사항, 성분/재질, 한글표시사항정보, 첨부파일 입력가능
- 건강기능식품: 공통사항, 품목사항, 복합구성제품, 제조/가공공장, 성분/재질, 한글표시사항정보, 첨부파일 입력가능

✓ 신고내용

- 신고구분 : 본신고(보세장치장 반입 후 신고), 사전신고(도착예정일 5일전 신고)
- 신고제품구분 :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 신고기관 : 반입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검사기관(부록 참조)

2 신청인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input type="text"/> ... 직접입력 ... ▼
*주소			

수입검사 진행 상황을 통보 받기 원하시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잘못된 입력으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수입신고인(수입화주) 또는 수입신고대행업체에서 실제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통해 검사진행상황 통보)

3 수입신고대행업체 및 수입신고인(수입화주)

수입신고대행업체

추가하기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허가(등록)신고번호	<input type="text"/> Q
주소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업종 정보
수입식품종류수입신고를 수입화주가 아닌 수입신고대행업체가 신고하는 경우 대항업체 정보를 기재합니다.

수입신고인(수입화주)

업종등록 필요하기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input type="text"/> Q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input type="text"/> ... 직접입력 ... ▼

수입검사 진행 상황을 통보 받기 원하시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잘못된 입력으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등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신고인 및 수입신고대행업체 입력



4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포장장소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초기화** **해외제조업소사전등록 바로가기**

등록번호	<input type="text"/>
회사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신고재용구분이 '농·임산물' 인 경우 미기재 하여 그 외는 필수 기재합니다.
 신고재용구분이 '축산물' 인 경우에는 해외작업장 정보를 기재하고 그 외에는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기재합니다.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코드 미존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자당첨으로 문의바랍니다.

포장장소 **초기화**

*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	----------------------	----------------------	-----	----------------------

신고재용구분이 '농·임산물' 인 경우 필수 기재합니다.
 * 2016년 8월 4일 이 후부터는 신고된 해외제조업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포장장소, 해외작업장)를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고 불가
 - 해외제조업소(포장장소) 등록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참조
- 신고대상
 - 해외제조업소 : 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 해외작업장 : 축산물
 - 포장장소 : 농·임산물

5 수출업소

수출업소 **초기화**

*업소코드	<input type="text"/>
*회사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신고재용구분이 '농·임산물'·'축산물'·'수산물' 인 경우 필수 기재하여 그 외 미기재합니다.
 수출업소 코드 미존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자당첨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고내용

-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업소 신고
 -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해외수출업소 등록신청(☎1811-6496로 문의)
- 신고대상
 -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6 검사(반입)장소

검사(반입)장소 초기화

*보관창고코드	<input type="text"/>	보관업등록번호	<input type="text"/>
*상호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반입일자	<input type="text"/>
검사기관	<input type="text"/>		
비고	<input type="text"/>		

EMS의 경우 최물관리번호를 'NO'로 입력하시고, 보관창고코드 '01351002', '04002019', '04002068', '14002010', '03002151', '02002017', '02002079', '09002025', '77751000' 중에 하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보관창고 코드 가운데 두 자리가 '06, 07, 10, 11, 13, 70, 88'인 경우 수입식용용 보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연 : 021-411-019)
 보관창고 코드 가운데 두 자리가 '06, 09, 19'인 경우(수입창고) : 비고 항목에 필수로 표시 주소 등을 자유롭게 기재 가능
 보관창고 신규 추가 및 유효기간 만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등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보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관창고 입력
 - 보관창고 코드 가운데 두 자리가 ‘06, 07, 10, 11, 13, 41, 70, 76, 77, 78, 88’인 경우 수입식품등 보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신고 불가

7 제도가공업자

제도가공업자 초기화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상호	<input type="text"/>		
업종	<input type="text"/>	허가(등록 신고)번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용도가 '외화획득용 원료', '자사제품제조용'인 경우 필수 기재합니다.
 - 2016년 8월 4일 이 후부터는 신고된 업종만 가능하므로 사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바랍니다.

✓ 신고내용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식품제도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으로 신고
 -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의 용도가 ‘외화획득용 원료’, ‘자사제품제조용’인 경우 필수 입력



8 신고일반

신고일반

*용도	<input type="text"/>	신고유형 무표장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생산국(제조국)	<input type="text"/>	*수출국	<input type="text"/>
생산이확현	<input type="text"/>	가공표장형	<input type="text"/>
*일괄품	<input type="text"/>	*국내도착일	<input type="text"/>
*선학일자	<input type="text"/>	*선학일	<input type="text"/>
*신고명	<input type="text"/>	도출유형 품목제조보고번호	<input type="text"/>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input type="radio"/> 표시할 <input type="radio"/> 표시하지않음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사항없음	*유기식품용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합탈안인 식품 중 해당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식품조사처리 여부	<input type="radio"/> 원제품조사 <input type="radio"/> 원료조사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없음
*주물차승표부차당식 식품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고열당저열당 식품 해당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없음
*용유어를 삽입대상으로 표시 하여 판매하는 식품 해당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양자 대상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input checked="" type="radio"/> 자년도 계획수입 신청 및 승인된 압출에 한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고기준에 문의)
*고열당화식품 여부	<input type="radio"/> 열당상분 조별 식품 <input type="radio"/> 열당조별 식품 <input type="radio"/> 함도조별 식품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없음	*기능성표시일반식품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접수번호(실적)	<input type="text"/>	전자위생증명서발급번호	<input type="text"/>
해외우수제품일소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우수수입일소 등록번호	<input type="text"/>
도출유형 어린이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도출유형 건강기능식품 규격 적용	<input type="radio"/> 통용성 제품 <input type="radio"/> 최종 제품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세로포장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구성재용 수량:	<input type="text"/>
*다제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포장재 열당 승인 대상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도출유형 *제품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장기보존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통조림 <input type="checkbox"/> 말조림 <input type="checkbox"/> 라볶이식품 <input type="checkbox"/>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 <input type="checkbox"/> 냉동식품(가열하지 않고 섭취) <input type="checkbox"/> 우량분 규격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분말제품 <input type="checkbox"/> 액상제품 <input type="checkbox"/> 살균제품 <input type="checkbox"/> 알균제품 <input type="checkbox"/> 건조제품 <input type="checkbox"/> 유당유처리 제품 <input type="checkbox"/> 더 이상 가공 가능 조리지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input type="checkbox"/> *유당분 용감입자분말 용감 <input type="checkbox"/> 유당분 용감입자분말 용감 <input type="checkbox"/> 제조원래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갈수제품 <input type="checkbox"/> 장제제품 <input type="checkbox"/> 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도출유형 수입신고 참고사항 (최대 1,000 Byte)	<input type="text"/>		

[0 / 1000 bytes]

생산이확현, 가공표장형은 신고구분에 '수산물'이여 생산국이 '일본(JP)'인 경우 기재합니다.
 자사제품제조용 신고 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품마(1)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제품상태 용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수입식품정보마포 제품상태 용어 설명서(https://mpfood.mfds.go.kr/CFCH08F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 제품차당일소 또는 그 대량기판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용 용도를 정부지자체용(A)으로, 외화특출을 위한 박탈용, 전시회 용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용 용도를 박탈용 전시회용(B)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용도, 생산국, 수출국 등 신고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해당사항 신고
 - **가공포장현, 생산이확현** : 신고제품구분이 ‘수산물’ 이면서 생산국이 ‘일본’인 경우 필수 입력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여부, 식품조사처리 여부, 기능성표시일반식품 여부** 등 신고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 요망
 -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 계획수입 신속통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
 - **품목제조보고번호** : 자사제품제조용 등 품목제조보고서 제출대상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번호 입력
 - **접수번호(실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등 신고시 최초정밀검사 건의 접수번호 입력
 - **전자위생증명서* 발급번호** : 호주 · 칠레 · 태국 · 뉴질랜드 · 브라질산 축산물과

필리핀 · 페루 · 칠레 · 노르웨이 · 러시아 · 태국 · 에콰도르 수산물의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한 경우 종이증명서(원본) 대체 가능

- **제품상태** : 제품 포장형태 · 제품성상 등 신고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해당사항 신고

※ 식품유형별 규격 적용 등을 위하여 해당되는 신고제품의 제품상태를 정확하게 입력

- **수입신고 참고사항** : 신고하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 외 최초 수입실적 등 검사담당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입력

※ 유의사항 : 검사담당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한글표시 기타란’에 입력하지 말 것

- **무포장 여부** : 신고하는 제품의 무포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

-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 여부** : 신고하는 제품이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입력

- **건강기능식품 규격 적용** : 신고하는 제품이 원료성 또는 최종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입력



UNI-PASS 신고서 작성 랩

공통
사항품목
사항복합
구성
제품한글
표시
사항제조
가공
공정성분
재질도축
가공장식육
종류
부위첨부
파일

1 신고품목공통정보

신고품목공통정보

*제품유형(품목코드)	<input type="text"/>	대표이력번호	<input type="text"/>
*세번부호(HS코드)	<input type="text"/>	*HS번호	<input type="text"/>
*종량수	<input type="text"/>	*종수당	<input type="text"/>
*종수중량 (kg)	<input type="text"/>	*종과세가격 (US\$)	<input type="text"/>
한글표시사항	<input type="text"/>		

*제품유형(품목코드)은 신고제품구분이 '육산물', '수산물',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인 경우 필수 기재하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일 경우 미기재 합니다.
(예)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까지 확대
이력번호(대표이력번호)은 신고제품명, '육산물', '수산물', '농·임산물', '제품유형(품목코드)', '8010101', '8010102' 로 시작되는 품목인 경우 필수 기재.
* 단, '종수' '가시제형' '제품명' 인 경우 선택 기재.
* 종량수, 종수당, 종수중량, 종과세가격은 단위의 품목정보 입력 시 자동 계산됩니다.(단, 종수당 단위는 신청인 입력 필름)
* 신고제품구분과 관계없이 HS 번호는 필수 기재하여야 함

✓ 신고내용

• 제품유형

-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신고
- 농·임·축·수산물 및 식품첨가물: 신고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명 검색 후 신고
-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가 하나인 경우 해당하는 명칭 검색 후 신고,
단, 둘 이상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복합영양소제품',
'복합기능성제품',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 중 해당하는 품목 신고

• 대표이력번호: 축산물 중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필수 입력

• 세번부호: 제품유형 선택시 대표적인 세번부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나 신고하는 제품과 다른 경우 변경하여 신고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고시)에 따른 수입허용가능 국가와 품목 확인 필요

2 품목정보

신고품목등록정보

*제품유형(종류코드)	<input type="text"/>	대표이력번호	<input type="text"/>
*세번부호(KSC번호)	<input type="text"/>	제1번호	<input type="text"/>
*총합수	※ 농장수는 농축사장 법의 품목정보 입력 후 추가 시 자동 생성됩니다.	*총수량	<input type="text"/>
*중순량 (kg)	<input type="text"/>	*중과세가격 (US\$)	<input type="text"/>
한글표시사항	<input type="text"/>		

제품유형(종류코드)은 신고재량구분이 "육산물" "수산물"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용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인 경우 필수 기재하며, "기유 또는 첨가제용" 일 경우 미기재 합니다.
 (계량)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용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재 확대
 이력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는 신고재량구분 "육산물", "농·임산물", "가공식품", "제품유형(종류코드)" "8010101", "8010102"로 시작되는 품목인 경우 필수 기재.
 - 단, 농도 "저사제량제품용" 인 경우 선택 기재.
 중합수, 총수량, 중순량, 중과세가격은 부속의 품목정보 입력 시 자동 계산됩니다.(단, 총수량 단위는 신형인 입력 필요)
 신고재량구분과 관세율이 0% 번호는 필수 기재하여야 함
 23. 1. 4부터 한글표시사항 작성 시 신고품목등록정보 "한글표시사항(엑스티브)" 항목에는 작성할 수 없으며, "한글표시사항정보" 밑에서만 작성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수입업자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정보

*제품명	<input type="text"/>	*대표품목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한글명	<input type="text"/>	*순수량	<input type="text"/>
*품목식별부호	<input type="text"/>	*최종관리번호	<input type="text"/>
*수량	<input type="text"/>	*중과세가격	<input type="text"/>
*과세가격	<input type="text"/>	중과세가격	<input type="text"/>
가공기간	<input type="text"/>	중과세가격	<input type="text"/>
도축기간	<input type="text"/>	※ 이력번호가 존재 시 도축기간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그 외 미기재	

신고재량구분이 육산물 인 경우 소비기한 (가공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품목여부는 최소 3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품목이 1건인 경우 대표품목여부 "예" 로 선택하거나, 품목이 여러 건인 경우 대표품목여부 "는" 소비기한 시작일(제조일자)가 빠른 제품을 대표품목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 품목식별부호는 품목정보 입력 후 추가 시 자동 생성됩니다.
 신고재량구분이 수산물 인 경우도 한글제품명을 신고일이 저우를거 변경하여 신고 가능

[추가](#) [수정](#) [삭제](#) [초기화](#) [발진제 삭제](#)

현재: 0건

품목식별부호	최종관리번호	중수량	한글명	순수량	과세가격	선택
	제품명		한글명		소비기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회선택](#) [선택은 과일 운영](#) [음](#) [역방향입력](#) [음](#) [역방향시도문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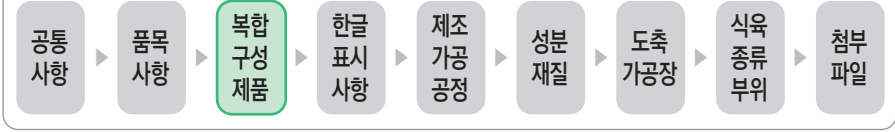
※ 한변에 최대 입력도 할수 있는 범은 300할 까지 입니다.
 ※ 역설 입력도중 오류 발생할 경우 이미 추가된 항목은 역설과들에서 삭제하시고 입력도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제품명, 한글명, 수량, 순중량 등 신고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



UNI-PASS 신고서 작성 랩



1 복합구성제품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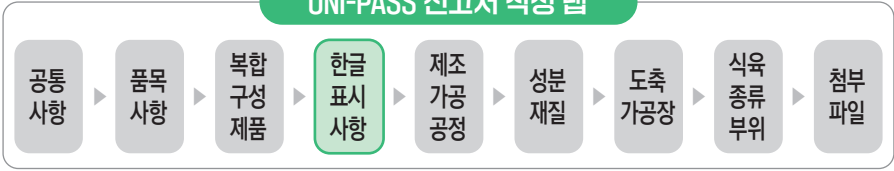
Home > 통관신청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공통사항	품목사항	복합구성제품	한글표시사항정보	제조/가공공정	성분/재질	도축/가공장	식육종류/부위	첨부파일
*신청번호	WASCV	22	재면	*신청일자	2022-11-04			
*전송구분	원본			신청문서구분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전송구분 0 : 최초전송(최초 신청서 전송 시) 10 : 재전송(최초전송 이후부터 접수통보 이전까지) 1 : 취소신청(최초전송 이후부터 접수통보 이전까지)								
복합구성제품 [행추가] [행삭제]								
선택	순번	*참목코드	참목명	이력번호				
<input type="checkbox"/>	1							
※ 품목사항입 적용유형(참목코드) 선택 시 복합구성제품합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아래의 수입식품의 경우는 대외 참조코드 이외 적용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품목 신고 - 수산물 중 재물부위제품(상용) : 대외코드 80209010000000000000로 세부 구성품목 신고 - 고 및 육의 용해 구성이 필요한 제품 : 라면(라면은 유당면으로 신고하지, 구성용인 유당면, 향신료조제용 등 신고) 등 건강기능식품 중 기능성을 표시한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가 두 개 이상인 복합제품은 아래의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 복합제품 : 복합영양소제품(0A000000000000000000), 복합기능성제품(0B000000000000000000), 영양소 및 기능성복합제품(0C000000000000000000) 중 해당하는 코드로서 신청 * 예) 기능성 성분(혹은 영양성분)이 비타민(A와 글루코사민인 경우)을 함유하는 영양소 및 기능성복합제품(0C000000000000000000)으로 신고								

✓ 신고내용

- 신고하는 제품이 둘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신고(하나의 품목으로 구성된 제품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 예1) 해물혼합(수산물)의 경우 구성하는 수산물(새우, 조갯살 등) 신고
 - 예2) 라면의 경우 구성하는 유당면, 소스, 향신료 조제품 등의 품목으로 신고(‘품목사항’에 유당면 입력 시 유당면 외의 나머지 구성품목 입력)
 - 예3) 비타민 A, C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사항’에 ‘복합영양소제품’을 입력하고, 구성하는 ‘비타민 A’, ‘비타민 C’ 품목 모두 입력
- ‘품목사항’에 입력한 품목은 ‘복합구성제품’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행추가’를 통해 추가 품목 입력

UNI-PASS 신고서 작성 탭



1 한글표시사항

한글 표시사항 도움말

□	순번	표시사항	표시사항 영칭	표시사항 내용
□	1	[103] 수입판매업소의 명칭		[0 / 3000 bytes]
□	2	[105] 수입판매업소의 연락처		[0 / 3000 bytes]

신고제품 구분별 입력항목표 탈수가 탈식제 위보 이동 아레보 이동 미리보기

파일선택 선택된 파일 전송 역셀업로드 역셀업로드식다운로드

✓ 신고내용

- 신고하는 수입식품의 현품사진에 표시된 한글표시사항과 모두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신고
 - ‘행추가’를 통해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순서대로 표시사항 항목별로 구분하여 선택한 후 실제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표시사항 명칭 및 표시내용 입력
- 미리보기를 활용하여 입력된 내용과 실제 한글표시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이전 신고서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일자, 소비기한 등 이전 신고제품의 신고내용이 수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유의사항

- 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 : ‘유전자변형식품’ 항목 칸에 입력
- ②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 란에 입력
 단,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우려 주의 표시 : ‘기타’ 항목 란에 입력
 (예 :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③ ‘기타’ 항목 : 표시사항 선택 목록에 없는 항목(예 : 경고, 반품 및 교환장소, 주의사항, 조리방법 등) 입력

UNI-PASS 신고서 작성 탭



1 성분/재질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관리자)

Home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공통사항 > 품목사항 > 복합구성제품 > 한글표시사항정보 > 제조/가공공정 > **성분/재질** > 도축/가공장 > 식육종류/부위 > 첨부파일

*신청번호 99999 - 24 - 재질 *신청일자 2024-09-26
 *전송구분 기본 신청문서구분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전송구분
 9 : 최초전송(최초 신청서 전송 시)
 35 : 재전송(최초전송 이후부터 접수종료 이전까지)
 1 : 취소신청(최초전송 이후부터 접수종료 이전까지)

성분 **도축장**
 배합비율 중 합: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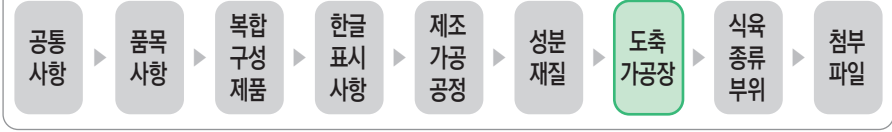
순번	상위순번	구분	성분코드	성분명	배합비율	제품 구분	품목 유형	추가
1		주	A1002823000000	용안향	50			삭제 부성분추가 부분합성분추가 주성분삭제 혼합성분삭제
2		혼합	UZ222222Z			--선택--		삭제 부성분추가 부분합성분추가 주성분삭제 혼합성분삭제

① 성분은 신고제품구분이 "육신물"일 경우, 제품유형이 "가공"인 경우만 입력 가능함
 ② 육신물의 경우에도 성분코드 및 배합비율을 입력해야 함
 ③ 혼합성분은 부성분의 해당하는 성분들 2개 이상 입력해야 함
 ④ 사용기준이 정해진 식품첨가물 입력 금지
 ⑤ (주성분의 경우) 신고 제품이 사용된 비율을 적분율로 입력
 ⑥ (부성분의 경우) 혼합성분에 사용된 비율을 적분율로 입력
 혼합성분이 가공식품(육신물)가공 포함)이 아닌 경우 가공식품(육신물)가공 포함)이 해당되는 상위 성분의 사용된 비율을 적분율로 입력
 ※ 식품첨가물 중 상위 첨가료의 유형을 기재하거나, 배합비율을 양이 아닌 구제적인 수치로 기재해야 하는 대상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유통기자재 대상 첨가물 여부(https://mpfood.mfds.go.kr/FCJ03F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 신고하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 및 재질 신고
 - 원재료는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원료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를 신고
 - 원재료 중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배합비율을 반드시 기재
 - ※ 다만, 그 식품첨가물이 원재료의 하위성분인 경우, 배합비율은 신고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닌 ①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에 해당하는 상위성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②상위성분의 식품공전 상의 품목유형을 기재
- 원재료 코드의 경우 단일 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 이상의 원료가 혼합된 원재료의 경우 '혼합성분등록'을 선택하여 입력
 - 혼합성분의 경우 별도의 코드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며, '혼합성분등록' 입력 시 명칭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단,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원재료가 부성분으로 입력되어야 함)
- 신고하고자 하는 원재료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서 원재료 코드 신청

UNI-PASS 신고서 작성 탭



1 도축/가공장(축산물에 한함)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Home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공통사항 > 품목사항 > 복합구성제품 > 한글표시사항정보 > 제조/가공공정 > 성분/재질 > **도축/가공장** > 식육종류/부위 > 첨부파일

*신청번호: WASQY - 22 - 재한
*신청일자: 2022-11-04
*인송구분: 일반
신청문서구분: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전송구분
0 : 최초신청(최초 신청서 간송 시)
30 : 재신청(최초신청 이후부터 접수통보 이전까지)
1 : 취소신청(최초신청 이후부터 접수통보 이전까지)

도축/가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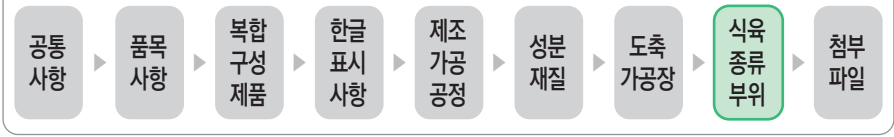
선택	No	직업장(도축장/가공장)등록번호	EST 번호	직업장(도축장/가공장)회사명	주소	수량	운영명
<input type="checkbox"/>	1						

☑ 신고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도축, 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고 불가



UNI-PASS 신고서 작성 탭



1 식육종류/부위(축산물에 한함)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Home > 통관단말장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공통사항 > 품목사항 > 복합구성제품 > 한글표시사항정보 > 제조/가공공정 > 성분/재질 > 도축/가공장 > **식육종류/부위** > 첨부파일

*신청번호: WAS24 - 22 - 재한
*신청일자: 2022-11-04
*신청구분: 일반
신청문서구분: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전송구분
9 : 최종전송(최초 신청서 전송 시)
39 : 재전송(최초전송 이후부터 접수통보 이전까지)
1 : 취소신청(최초전송 이후부터 접수통보 이전까지)

식육종류/부위

선택	No	식육종류	부위/부위명	품목코드	품목명	수량	승용량
<input type="checkbox"/>	1	소고기	BF02 Q 물살	B01010100000002ABAA	소고기(냉동 정육(냉동육(소고기정육(가축)))		

✓ 신고내용

- 신고하는 축산물(식육)에 대한 부위명 및 부위별 수량, 중량 신고



03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른 수입신고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구분	관련 규정	구비서류
<p>제출 서류</p>	<p>「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①-2 수입식품등의 사진 ②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법」 제21조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⑤ 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 ⑥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⑦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 ⑧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⑨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⑩ 상기 ①부터 ⑨까지의 서류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구분	관련 규정	구비서류
제출 서류	수입식품 관련 행정규칙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등)	① 반송품 : 반송사유서,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유서, 품목제조보고서(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수출처리계획서 ② 외화획득용 : 수출처리계획서 ③ 연구조사용 : 연구조사계획서
보관 서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8] 2. 터.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명서류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하며, 소비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 소비기한 종료일까지 보관)

* 위 목록은 관련 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이 게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



03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01 공통사항



1 수입신고 전 정밀검사 항목 및 검사지시의 확인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통관단계 검사지시’를 통해 반기별(매년 1월, 7월) 중점검사항목 및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지시 사항 확인 가능

2 정밀검사에 따른 수수료

-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 (민간검사기관은 별도 수수료 운영)
 -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고객센터 → 검사수수료 안내’를 통해 품목별 모의 수수료 확인 가능
-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 수수료

4. 수입식품등의 검사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 1) 별표 9 제2호다목4)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 2) 별표 9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 3) 별표 9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수입 최소량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 후 수입 최소량 이상 수입신고
- 4) 별표 10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현장검사결과 지방식약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5) 별표 10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㉓ 정밀검사에 따른 검체 수거량

- 구분별 수거량은 다음과 같으며,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의 수량 또는 중량이 수거량과 같거나 적은 경우 해당 수입신고서는 반려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

1. 수거대상 및 수거량

가. 식품

- 1) 가공식품: 600 (g·mL)(다만, 캡슐류는 200 g)
- 2) 유탄처리식품: 추가 1 kg
- 3) 자연산물
 - 가)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3 kg
 - 나) 채소류: 1~3 kg
 - 다) 과실류: 3~5 kg
 - 라) 수산물: 0.3~4 kg

나. 식품첨가물

- 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 가) 고체: 200 g
 - 나) 액체: 500 (g·mL)
 - 다) 기체: 1 kg
- 2) 비소·중금속 함유량 시험: 50 (g·mL)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라. 건강기능식품

- 1) 액상제품: 600 (g·mL)
- 2) 정제·캡셀·분말·과립·환제품: 200 (g·mL)
- 3)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 (g·mL)
- 4) 원료 또는 성분
 - 가) 자연산물: 1 kg
 - 나) 성분: 500 g

마. 축산물

- 1) 식육·포장육 : 500 g
- 2) 원유 : 500 mL
- 3) 식용란 : 20개
- 4) 식육가공품 : 500 (g·mL)
- 5) 유가공품 : 500 (g·mL)
- 6) 알가공품 : 200 (g·mL)

2. 수거방법

가.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나.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라.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마. 수거대상 축산물이 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할 수 있다.

바.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및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사. 식품조사처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조사처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 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생버섯·곡류 및 두류는 1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아.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 등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자.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차.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화학검사를 고려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6개를 수거할 수 있다.

카.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 6개로 하되, 800 (g·mL) 이상을 수거할 수 있다.



02

농산물 신고요령



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의 품목 또는 유형에는 해당 농산물의 품목을 입력

- 품목은 각 농산물별 부위(뿌리, 잎 등) 및 보관조건(건조, 신선, 냉동 등)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고
- 적절한 품목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지방청 수입식품검사소로 문의하여 신규로 생성요청

2 농산물의 농약 검사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항목을 검사

- 최초정밀검사(무작위검사 포함) 대상 농산물의 경우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1호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2.2.에서 정하는 농약을 검사(514종)
* [부록 3] 참조

3 일본산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은 수입금지

지역명	금지품목
후쿠시마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버섯류, 키위, 고추냉이, 두름,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름(독활)
지바현	엽채류, 엽경채류, 차, 버섯류, 죽순
도치기현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두름, 죽순, 밤,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군마현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오가피, 두름
이바라키현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 버섯류, 죽순, 오가피
미야기현	버섯류, 청나래고사리, 죽순, 고비, 오가피, 메밀, 대두, 쌀, 고사리, 두름
이와테현	버섯류, 오가피, 메밀, 대두,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나가노현	버섯류, 오가피
사이타마현	버섯류
야마나시현	버섯류
아오모리현	버섯류
시즈오카현	버섯류
가나가와현	차
니가타현	오가피(오갈피나무)
야마가타현	버섯류(야생)

03

수산물
신고요령

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의 품목 또는 유형에는 해당 수산물의 품목을 입력

- 품목은 각 수산물별 보관조건(건조, 신선, 냉동 등), 처리형태(살, 필렛, 자숙 등)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고
- 적절한 품목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지방청 수입식품검사소로 문의하여 신규로 생성요청

2 수산물에 대한 약정을 맺은 국가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허용 국가는 위생증명서를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

- 약정국(12개국, '26.1. 현재)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스페인
-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허용국가(28개국) : 프랑스, 일본, 페루, 필리핀, 칠레, 우루과이, 아이슬란드, 에콰도르, 싱가포르, 러시아, 마크로네시아, 미국, 모리셔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우크라이나, 파나마, 아르헨티나, 피지, 포크랜드군도, 스페인, 스리랑카

3 일본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

-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지바현
- 일본 수산물 산지증명서 및 방사능 성적서 제출 8개현 : 홋카이도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미에현, 에히메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 일본 수산물 산지증명서 제출 : 위 16개현 이외 일본 수산물

04

축산물 신고요령



1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인지 확인 후 수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해당 국가 및 품목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고시)」에서 확인 가능

2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단위로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유의사항 마.에 따라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 단위로 하여야 함

3 식육의 품목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 제1항 제3호에 따라 식육의 품목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함



05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신고요령



1 동일 모션으로 동일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 수입식품은 반드시 수입신고서 1건으로 신고

- 수송편명 또는 입항일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서 별도 작성
- 동일모션으로 수입된 동일 수입식품이나, 여러 화물관리번호, 제조일자(또는 소비기한) 또는 포장단위가 혼재된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작성 시 3쪽(UNI-PASS 수입신고서 중 ‘품목사항-품목정보’)에 모든 화물관리번호 및 제조일자별 총수량, 순중량, 과세가격을 구분 기재

2 원재료 및 제조공정은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대로 신고

- 수입신고서에 작성된 원재료 및 제조공정은 서류검사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한 원재료 및 제조공정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원재료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고시되지 않은 원재료인 경우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입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목록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별표 3]에서 확인 가능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 및 사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정밀검사(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부적합 제품과 제조일자(없는 경우 소비기한)가 동일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은 부적합 처리

- 정밀검사(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이면서 제품명이 동일하고 제조일자(없는 경우 소비기한)가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신고 하는 경우 부적합 처분됨
 - * 관련 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3.다.7)

4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대상 식품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 「수입금지 식품등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62호, 2025.9.1.시행)에 따라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음

국가명	금지품목
<p>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p>	<p>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 - 다만, 아래 품목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가능</p> <p>1) 우지가공품 :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이하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p> <p>2) 젤라틴, 콜라겐 : 원피, 가죽 및 뼈에서 유래되었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p> <p>3) 제2인산칼슘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단, 소석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p> <p>*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수입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p>



06

기구 및 용기·포장
신고요령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의 재질을 신고

- 재질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재질을 신고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제 및 금속제 등이 도장·도금된 경우 해당 재질코드로 신고
- ‘야자잎’, ‘바나나잎’ 등 자연산물의 경우 ‘천연재질’로 신고
- 신고하고자 하는 재질코드가 없는 경우 시스템 문의처로 문의(☎1811-6496)

2 색상이 다르더라도 재질이 동일한 기구·용기·포장은 1건으로 수입신고 가능

- 제조국, 제조업소, 수입자, 재질 등이 동일하고 색상 또는 모델명이 다른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대표적인 제품의 제품명을 1쪽에 기재하고, 각 바탕색상(무늬) 또는 제품명은 신고서 양식 3쪽의 향란에 기재(UNI-PASS 수입신고서 중 ‘품목사항-품목정보’)
- 색상이 다르더라도 재질이 동일한 기구·용기·포장은 1건으로 수입신고 가능함, 다만, 한가지 색상이라도 그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음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04

수입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

01 수입신고 및 검사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신규교육 4시간) 하여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1577-3869, <http://www.kfia21.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61-2371, <http://edu.khsa.or.kr>) 또는 한국식품안전협회(02-2051-7006, <http://safetyfoodedu.or.kr>)에서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창구 → ‘수입식품’ 검색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 민원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 필요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회원가입 → 업체 및 대표자 → 사용자등록 →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업체 정보 → 부호 및 서비스신청vSMS 신청 → 승인요청) 후 ‘통관단일창구’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원재료 배합비율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주원료(수입신고 제품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원재료)와 사용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배합비율을 밝혀 신고하여야 하나, 모든 원재료의 배합비율(100%)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배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함량은 “0”으로 신고가 가능

다만, 기준·규격 적용 및 표시기준 등 검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원재료의 배합비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 표시에 원재료 정보가 일부만 표시된 경우 신고방법은?

제품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 중 일부가 수출국의 표시 규정 등에 따라 현품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원재료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BSE(소해면상뇌증) 관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BSE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다만, 우지가공품, 젤라틴, 콜라겐, 제2인산칼슘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BSE 비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도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등 수입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 제출’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기위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조사용 제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용도는 ‘연구조사용’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용도는?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등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용도는 ‘자사제품제조용’으로 신고하고, 제도가공업자는 국내 통관 후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로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유통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통관 후 소분·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별크포장 형태의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통관하여 단순히 소분·포장 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고 검사받아야 합니다.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접시는 수입신고하여야 하나요?

식품용이 아닌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한 경우에 한해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용 기구의 모든 재질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서 작성 시 재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재질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질명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명칭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용 기구의 최초 정밀검사 시 검체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는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과 수거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으로 정하고 있어 재질, 검체의 크기, 시험항목 등에 따라 필요한 검체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이 최초로 수입되면 어떤 항목을 검사하나요?

일반적으로 수입식품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합니다.

수입식품의 중점검사항목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통관단계 검사지시('중점'으로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정밀검사 시 검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최초 정밀검사 시에 검사기관은 민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해당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에 희망하는 민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우리 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정밀검사 비용은 검사항목별로 검사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검사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 민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니 해당 검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가 불가한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민간검사기관의 검사항목(품목)에 따른 시험검사 가능여부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의뢰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수입 가공식품의 [사례 1] 제품명이 변경되면, [사례 2] 원재료 일부가 변경되면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최초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수입신고하는 가공식품이 이미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하여 통관된 제품과 제조국, 제조회사, 제조방법, 원재료명은 동일한 경우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례 2]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의 원재료명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은 본 안내서 ‘1.3.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재검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제2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당초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시 수입할 수 없나요?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유통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식품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 :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 선정
- 2)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 :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 (농·임·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 제외)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제품명 포함)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 소비기한)가 모두 동일한 수입식품등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구비서류



수입신고 시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 제출’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터목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서류도 상기 식약처 누리집에 함께 공지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제품의 형태 및 제조국가 등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니 위 규정 및 ‘식품안전나라’의 게시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한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생증명서 등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수입식품이 반입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제조용, 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제출하는 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 뿐만아니라 수출국에서 제품 선적전에 촬영한 것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진 제출 범위

- ① 제품 전면 사진(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닿는 면의 재질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② 최소 판매단위 주표시면(제품명, 내용량)
- ③ 최소 판매단위 수출국 표시 제조회사, 원재료명,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소비기한, 수입신고서 상의 표시*
 -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등, 할랄인증 수입식품, 식품조사처리 여부 등 표시
- ④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사진
 - * 자사제품제조용,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한글표시사항 생략 대상인 경우 수출국표시 사항 첨부 가능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증명내용 이외에 발행한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면제를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식품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와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원본을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부증명서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만 해당

또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고 제조업소가 직접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구분유통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증명서 유형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용된 원재료 또는 제품을 구분관리 하였다는 내용의 제조업소 발행 증명서

2) 사용된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조업소 발행 증명서(검사성적서 사본 제출 가능)

3) 최종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조업소 발행 증명서(검사성적서 원본 제출 가능)



유기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해외생산 유기식품을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서식의 유기식품 등 여부에 ‘예[√]’ 로 체크하고 유기식품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유기식품 수입신고 대상

- ① 동등성 인정제품 :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의 유기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 가공식품
- ② 국내법 적용 인증제품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 가공식품)

1) 동등성 인정제품

- 협정국(미국·EU·영국·캐나다) 인증기관이 발급한 유기인증서 사본, 전자수입증명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전자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

2) 국내법 적용 인증 제품

- 농관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사본과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 원본 또는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전자 거래인증서

※ 유기인증 관련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183)로 문의



BSE(소해면상뇌증) 비발생 국가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서류?

BSE 비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은 ‘BSE 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 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 유래 또는 소 뼈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서류?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및 가죽) 유래 또는 소 뼈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증명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협의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 동물검역 → 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 → 품목에서 ‘콜라겐’ 또는 ‘젤라틴’ 검색

BSE 발생 이력 3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우피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등 포함)]

- ①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산되었음
- ② 젤라틴과 콜라겐을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하였음

[소뼈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등 포함)]

- ①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산되었음
- ② 젤라틴과 콜라겐을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하였음
- ③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및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사용되지 않았음

- ④ 소뼈는 다음의 모든 공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감염력 감소 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쳤음
- 1) 탈지(degreasing), 2) 산성 탈염(acid demineralisation), 3) 산 또는 알칼리처리(acid or alkaline treatment), 4) 여과(filtration), 5) 살균(138°C에서 최소 4초간) 혹은 전염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와 동등 이상 처리(고압 열처리 등)
- ⑤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승인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젤라틴 및 콜라겐을 사용하였음을 증명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매 수입 시 생산지 증명서(13개 이외 지역) 또는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포함하는 정부증명서(13개도·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13개 도·현(수산물은 일부 상이)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이가타, 시즈오카

생산지증명서는 제조일자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제조일자별로 각각 검사한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03 축산물 분야



축산물 수입 요건이 별도로 있나요?

축산물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품목이어야 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품목은 ‘우리 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해외작업장 등록 여부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 검색 →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축산물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축산물을 수입신고 할 때는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 위생증명서’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합니다.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은 ‘우리 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육가공품을 견본품으로 수입하고자 하는데 신고하여야 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3.에 따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에 해당된다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샘플을 수입하여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제품에 견본 또는 광고물품이라는 표시가 명확하여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 관세청에서 최종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수입 축산물의 검역과 관련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축산물을 재분할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12)에서 ‘포장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따라서, 포장축산물이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분할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최소판매단위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이 여러 개의 선하증권(B/L NO)으로 수입되었을 때 신고방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유의사항 사.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되, 제품별, 품목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4. 사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기준은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육의 품목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 제1항 제3호에 따라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합니다.



04 수산물 분야



수산물원료 가공과정에서 [사례 1] 소금을 첨가한 경우, [사례 2]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수산물인가요?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 3. 용어풀이

[사례1]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 원료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13-6. 식염에 해당하는 천일염 및 기타소금을 사용하여 단순 혼합한 경우 단순 수산물로 수입가능하나,

* 혼합 비율 표기 필요

[사례2]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 원료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경우 가공식품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품종은 같으나 유형(처리형태)이 다른 경우 기 등록된 품종코드 사용 가능한가요?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이 기존에 등록된 품종 및 형태와 동일한 경우 기 등록된 품종코드 사용이 가능하나, 품종은 동일하나 처리형태가 다른 경우 품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 등록된 품종코드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통계정보 → 통계 → 일반통계)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수입수산물의 신규품종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지방식약청(또는 수입식품검사소)이 현품의 한국명, 영명, 학명, HSK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규 품종코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품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후 지방청장이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입수산물 신규 품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면 신규 품종코드가 신설됩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 조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고, 식용 근거, 학명·이명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원료와 기름치는 제외한다.



위생약정국의 경우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한가요?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수출국이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각 위생약정 고시에 따라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포장된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수산물 약정 체결국(12개국, '26.1.기준) : 러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출국 정부기관 소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가능한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부산물)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재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부산물)로 관리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부산물)

- ① 냉동식용어류머리[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 다랑어류 및 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Dissostichus mawsoni*)]에 한함
- ②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모든 어종(복어류 제외)]
- ③ 냉동식용어류내장[모든 어종의 간과 알(복어 간과 알 제외), 창난, 이리(곤이)]에 한함
- ④ 냉동식용연체류내장[오징어 난포선에 한함]

제품이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산부산물인 경우에도 수입 가능한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고, 수산물로 분류되더라도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상 어류의 웨이스트*로 분류되므로 식용으로 수입 불가하여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반려처리됩니다.

* 수산물 육질부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내장(어류의 간과 알 제외), 꼬리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부산물) 수입 허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므로 수입허용국가 및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위생평가 절차 : 수출국 정부 수입허용 요청 → 설문서 송부 → 답변서 검토 → 수출국 위생관리실태 현지조사 → 수입허용여부 결정 →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 및 수출위생증명서식 협의 →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수산물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신고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한글표시사항, 위생증명서 등)를 수입되는 식품의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 ① 필수 제출 서류
 - 수입신고서, 한글표시사항
- ② 약정국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 ③ 일본산 수산물
 - 생산지증명서, 방사능 검사증명서
- ④ 외화획득용 및 자사제조용 등
 - 수출계획서, 영업허가등 인허가서류 사본,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원산지) 수산물(생산, 제조, 가공한 수산물 및 단순가공수산물)에 대해서 일본 정부증명서(생산지 및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8개 도·현**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증명서 원본 및 생산지증명서가 요구되며, 이외 나머지 도·현에 대해서는 생산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

** 가나가와, 도쿄도, 홋카이도, 에히메, 구마모토, 미에, 가고시마, 아이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1조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식품등(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등)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결과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 제5항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제14조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 조건부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별표9] 2.다.1)에 따라 현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 ②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해·발해·황해 및 동중국해 이외의 해역에서 어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복어
- ③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31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별표3] 제 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 ④ 활어, 냉동품, 건제품

수입수산물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수입 수산물 검사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하고 있으며, 정밀 및 표본검사 시 중금속(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방사능(세슘, 요오드), 패류독소(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등), 복어독, 동물용의약품, 일산화탄소, 히스타민, 벤조피렌 이외에도, 국내·외 위해정보 발생 시 해당항목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 수산물의 중점검사항목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통관단계 검사지시(‘중점’으로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냉동수산물의 내용량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얼음막 코팅은 냉동수산물의 건조 및 유소현상을 방지하여 제품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용량을 증량시키기 위해 과도한 얼음막 코팅을 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량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제8.일반시험법 → 1.3 식품 중의 내용량 시험법 → 다.7)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을 따르고 있습니다.



05 표시사항



수입식품에 수입자의 상표를 표시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주문자(수입자 또는 판매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에 수출국 제조업소 명칭이 외국어(수출국 언어)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제조업소 명칭을 표시해야 하나요?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영업소명과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 자체에 외국어로 제조업소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에는 제조업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영양표시는 현품 수출국 표시 그대로 한글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수입식품에 수출국에서 표시한 영양성분은 표시기준, 시험법 등이 국내와 다를 수 있어 수입식품 현품에 수출국 언어로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국내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기준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영양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하나요?

한글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조사 목적으로 국내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 주류 현품에 제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표시사항에 “제조번호 : 현품 별도표기”로 표시가 가능한가요?

수입 주류 제품의 현품에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포장재의 훼손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한글표시사항에는 제조번호나 병입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표시위치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현품 별도 표기”보다는 규정에 따라 표시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입되는 식품의 제조일자가 “연월” 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월” 의 1일로 표시가 가능한가요?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소비기한이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에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연월일의 “일”의 표시를 해당 “월”의 가장 빠른 날인 1일로 표시하는 경우 안전 측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입식품의 제조연월일이 “연월” 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1일을 제조연월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식품등에 “무보존료”, “보존료 무첨가”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보존료(13종)*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최종 제품에 검출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존료(13종)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1) 보존료를 사용할 수 있는 ‘소스’는 무보존료 표시 가능

예시 2) 보존료(13종)를 사용할 수 없는 ‘면류’에 무보존료 표시는 불가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등은 다음의 표시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가) 제품명, 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보관방법, 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바) 내용량, 원료명 및 함량(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여야 하나,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용 식품등은 상기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6순위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제품에 1)~3)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 1)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 3) 1) 및 2) 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복합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6가지 이상의 원재료는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나, 최종제품 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05

부록



01

영업자 준수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1. 공통사항

가. 삭제 (2023. 12. 1.)

나. 삭제 (2023. 6. 9.)

다.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17조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가. 수입식품등의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수입 쇠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로 한다)·제조국·수출국·제조회사명·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내역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입일부터 소비기한이 2년 이상 남은 식품등의 거래내역서는 소비기한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라. 장난감 등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장난감 등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해야 하며, 해당 장난감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장난감 등이 수입식품등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소비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포장·용기가 파손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수입식품등의 부패·변질·폐기·소비기한 경과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중 어느 하나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원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보관한다).
- 자. 수입식품등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차.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사진은 제외)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 카.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수입된 수입식품등이 안전성·기능성(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파.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수입식품등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은 보관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 삭제 <2019. 4. 25.>

러. 삭제 <2019. 4. 25.>

머. 삭제 <2019. 4. 25.>

버.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전환이 완료되는 날짜 및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번호를 신고(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냉동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
- 2) 냉동전환 신고 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
- 3)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서. 삭제 <2019. 11. 18.>

어.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터. 수입식품등의 원료, 제조공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명서류를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퍼.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식품등의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다른 식품 등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허. 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은 「약사법」 제2조제5호의 한약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3.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가. 수입식품등의 제품명·수입자·수입일·반입장소·수량·중량·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수출회사명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부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삭제 (2019. 4. 25.)

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해서는 안 된다.

4.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가. 수입식품등의 제품명·수입자·수입일·수량·중량·선하증권번호·반입일·반출일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수입식품등의 확인 및 구별이 가능하도록 화물관리정보의 표시를 수입식품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등은 공산품과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또는 구획보관이 어려울 경우 랩으로 감싸거나 별도 포장하여 다른 공산품 및 분진 등과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 위험물 등과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소비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바닥, 벽면 및 천장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바. 보관온도가 정하여진 수입식품등은 보관온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계 공무원등이 출입·검사·수거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아.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하나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된 수입식품등을 2 이상의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화물관리정보 표시란에 분리하여 보관할 제품의 보관장소 및 수량을 각각 적어야 한다.

02

수입식품 검사부서
및 관할구역

1 본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과명	위치	업무범위
수입식품정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개정 수입식품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현지실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에 있는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축산물 수입 관련 위생 및 안전 실태조사 수산물 수입 위험평가 총괄 및 조정 해외우수제조업소, 우수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관리
수입검사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 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입식품등 검사항목 지정 등 검사업무의 조정·관리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 운영
수입유통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등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영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선정 수입식품등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관리 수입식품등의 단속계획 수립, 회수관리, 이물조사, 행정제재 등 총괄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검사업무 등 총괄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	검사부서	위치	관할 구역
서울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	수입관리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 및 연천군 (검사를 제외한 구역)
	강릉 수입식품검사소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357 강릉영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층	강원도
	김포 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36 경인항 김포터미널 111호	김포·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산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	수입관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부산종합청사 4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검사를 제외한 구역)
	북항 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 13층	부산광역시 북항(신선대 부두, 감만 부두, 신감만 부두 제외),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우암동, 감만2동)
	신선대 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 대한통운컨테이너 터미널 1층	부산광역시 신선대 부두, 감만 부두, 신감만 부두,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감만2동 제외)
	양산 수입식품검사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산사옥 5층	양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삼동면), 김해(진례면, 생림면, 상동면)
	신항 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7 부산신항만공사 신항사업소 2층	부산광역시 신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제외), 창원, 김해 (진례면, 생림면, 상동면 제외)
	통영 수입식품검사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해양과학대학 6호관 1층	통영·거제·사천·진주·합천·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암남동국제수산물도매시장 회관동 1층 1103호	감천항

지방청	검사부서	위치	관할 구역
경인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	수입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안양·의왕·안산·시흥· 군포·과천·광명·성남
	미추홀 수입식품검사소	인천시 미추홀구 숙골로 113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제외), 부천시
	광주 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로얄플라자 4층	광주·여주·이천·양평·하남
	인천국제공항 수입식품검사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11호	인천국제공항
	평택 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마린센터 11층	평택, 화성(동탄 제외), 안성(일죽면, 죽산면 제외)
	인천항 수입식품검사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9층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한정)
	용인 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0번길 6-10 휘성빌딩 401호	용인, 수원, 화성(동탄), 오산, 안성(일죽면, 죽산면)
대구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검사소를 제외한 구역)
	광양 수입식품검사소	전남 광양시 향만8로 18-42 광양항자유무역관리원 2층	광양·순천·여수·고흥·곡성· 구례·보성·화순, 전라북도 남원
	군산 수입식품검사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두드림센터 1층 102호	전라북도(남원 제외), 충청남도 서천
대전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	천안 수입식품검사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4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서천 제외)

03

농산물 농약검사 항목



연번	항목	연번	항목
1	2,6-디아이피엔(2,6-DIPN, (2,6-Diisopropyl)naphthalene)	258	테트라디폰(Tetradifon)
2	아세토클로르(Aceto chlor)	259	테트라메쓰린(Tetramethrin)
3	아크리나트린(Acrinathrin)	260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4	알라클로르(Alachlor)	261	티오메톤(Thiometon)
5	알드린(Aldrin) 및 디엘드린(Dieldrin)	262	티오나진(Thionazin)
6	알리도클로르(Allidochlor)	263	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7	아메트린(Ametryn)	264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8	아닐로포스(Anilofos)	265	트리알레이트(Tri-allate)
9	아라마이트(Aramite)	266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10	아스폰(Aspon)	267	트리디판(Tridiphane)
11	아트라진(Atrazine)	268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12	아자코나졸(Azaconazole)	269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13	벤플루라린(Benfluralin)	270	트리플루랄린(Trifluralin)
14	벤퓨러세이트(Benfuresate)	271	빈클로졸린(Vinclozolin)
15	베노다닐(Benodanil)	272	족사마이드(Zoxamide)
16	벤조일프로프-에틸 (Benzoylprop-ethyl)	273	트리메타카브(Trimethacarb)
17	비에이치시(BHC)	274	육-비에이(Benzyladenine, 6-Benzyl aminopurine)
18	린단(Lindane)	275	아바멕틴(Abamectin)
19	비페녹스(Bifenox)	276	아세페이트(Acephate)
20	비펜트린(Bifenthrin)	27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21	보스칼리드(Boscalid)	278	알디카브(Aldicarb)
22	브로모부타이드(Bromobutide)	279	알레트린(Allethrin)
23	브로모포스-메틸(Bromophos-methyl)	280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연번	항목	연번	항목
24	브로모포스-에틸(Bromophos-ethyl)	281	아미설브롬(Amisulbrom)
25	브로모프로필레이트(Bromopropylate)	282	아미트라즈(Amitraz)
26	부피리메이트(Bupirimate)	283	아자메티포스(Azamethiphos)
27	뷰프로페진(Buprofezin)	284	아진포스메틸(Azinphos-methyl)
28	뷰타클로르(Butachlor)	285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29	뷰타페나실(Butafenacil)	286	베나락실(Benalaxy)
30	뷰트랄린(Butralin)	287	벤디오카브(Bendiocarb)
31	뷰틸레이트(Butylate)	288	벤설라이드(Bensulide)
32	카두사포스(Cadusafos)	289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Benthiavalicarb-isopropyl)
33	카보페노티온(Carbophenothion)	290	벤조비사이클론(Benzobicyclon)
34	카복신(Carboxin)	291	벤족시메이트(Benzoximate)
35	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ethyl)	292	비스트리플루론(Bistrifluron)
36	키노메티오네이트(Chinomethionat)	293	바이오레스메트린(BioResmethrin)
37	클로르벤시드(Chlorbenside)	294	비터탈놀(Bitertanol)
38	클로르부팜(Chlorbufam)	295	빅사펜(Bixafen)
39	클로르단(Chlordane-trans)	296	브로마실(Bromacil)
40	클로르에톡시포스(Chlorethoxyfos)	297	뷰토카복심(Butocarboxim)
41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298	카펜스트롤(Cafenstrol)
42	클로르펜손(Chlorfenson)	299	카바릴(Carbaryl)
43	클로르플루레놀-메틸 (Chlorflurenol-methyl)	300	카벤다짐(Carbendazim)
44	클로르니트로펜(Chlornitrofen)	301	티오파네이트메틸 (Thiophanate-methyl)
45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302	카베타마이드(Carbetamide)
46	클로로프로필레이트(Chloropropylate)	303	카보퓨란(Carbofuran)
47	클로로넵(Chloroneb)	304	퓨라티오카브(Furathiocarb)
48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305	카프로파마이드(Carpropamide)
49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30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Chlorantraniliprole)
50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307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연번	항목	연번	항목
51	클로르피리포스-메틸 (Chlorpyrifos-methyl)	308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52	클로르탈-디메틸(Chlorthal-dimethyl)	309	클로리다존(Chloridazone)
53	클로르티온(Chlorthion)	310	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54	클로르티오포스(Chlorthiophos)	311	클로로톨루론(Chlorotoluron)
55	클로졸리네이트(Chlozolinate)	312	클로록수론(Chloroxuron)
56	신메틸린(Cinmethylin)	313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57	클로마존(Clomazone)	314	클로펜테진(Clofentezine)
58	코마포스(Coumaphos)	315	클로메프로프(Clomeprop)
59	시아노포스(Cyanophos)	316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60	사이플루페나미드(Cyflufenamid)	317	코르톡시포스(Crotoxypfos)
61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318	크루포메이트(Crufomate)
62	사이할로포프뷰틸(Cyhalofop-butyl)	319	시아나진(Cyanazine)
63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320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64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321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65	사이프라진(Cyprazine)	322	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66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323	사이클로에이트(Cycloate)
67	디디티(DDT)	324	사이클로프로트린(Cycloprothrin)
68	델타메트린(Deltamethrin)	32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69	트랄로메트린(Tralomethrin)	326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70	데스메트린(Desmetryn)	327	사이목사닐(Cymoxanil)
71	다이알리포르(Dialifor)	328	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
72	다이알레이트(Diallate)	329	다이뮤론(Daimuron)
73	다이아지논(Diazinon)	330	디설포톤(Disulfoton)
74	디클로베닐(Dichlobenil)	331	데메톤-S-메틸(Demeton-S-methyl)
75	디클로펜티온(Dichlofenthion)	332	데메톤-S-메틸-설펜 (Demeton-S-methyl-sulfone)
76	디클로플루아니드(Dichlofluanid)	333	디클로로보스(Dichlorvos)
77	디클로리미드(Dichlormid)	334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78	디클로뷰트라졸(Diclobutrazol)	335	디클로술람(Diclosulam)
79	디클로포프메틸(Diclofop-methyl)	336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80	디클로란(Dicloran)	337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연번	항목	연번	항목
81	디코폴(Dicofol)	338	디노테퓨란(Dinotefuran)
82	디크로토포스(Dicrotophos)	339	디우론(Diuron)
83	디에타틸-에틸(Diethatyl-ethyl)	340	도딘(Dodine)
84	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341	에마멕틴(Emamectin)
85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342	에스프로카브(Esprocarb)
86	디플루페니칸(Diflufenican)	343	에타복삼(Ethaboxam)
87	디메피퍼레이트(Dimepiperate)	344	에티오펜카브(Ethiofencarb)
88	디메타클로르(Dimethachlor)	345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89	디메타메트린(Dimethametryn)	346	에트림포스(Etrimfos)
90	디메테나미드(Dimethenamid)	347	파목사돈(Famoxadone)
91	디메티핀(Dimethipin)	348	페나미포스(Fenamiphos)
92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349	페나자퀸(Fenazaquin)
93	디메틸빈포스(Dimethylvinphos)	350	펜헥사미드(Fenhexamid)
94	디니코나졸(Diniconazole)	351	페녹사프로프-에틸 (Fenoxaprop-ethyl)
95	디니트라민(Dinitramine)	352	페녹시카브(Fenoxycarb)
96	디옥사티온(Dioxathion)	353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97	디펜아미드(Diphenamid)	354	펜설폰티온(Fensulfothion)
98	디페닐아민(Diphenylamine)	355	펜트라자마이드(Fentrazamide)
99	디티오피르(Dithiopyr)	356	페림존(Ferimzone)
100	에디펜포스(Edifenphos)	357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101	엔도설판(Endosulfan)	358	플루아지남(Fluazinam)
102	엔드린(Endrin)	359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103	이피엔(EPN)	360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104	에폭시코나졸(Epoxiconazole)	361	플루페나셋(Flufenacet)
105	이피티씨(EPTC)	36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106	에타코나졸(Etaconazole)	363	플루오메투론(Fluometuron)
107	에탈플루랄린(Ethalfuratin)	364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108	에티온(Ethion)	365	플루폭삼(Flupoxam)
109	에토펬메세이트(Ethofumesate)	366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110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367	플루리돈(Fluridone)
111	에티클로제이트(Ethychlozate)	368	플루설파마이드(Flusulfamide)

연번	항목	연번	항목
112	에톡사졸(Etoxazole)	369	플루티아셋-메틸(Fluthiacet-methyl)
113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370	플루톨라닐(Flutolanil)
114	페나미돈(Fenamidon)	371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115	페나리몰(Fenarimol)	372	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116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373	포메사펜(Fomesafen)
117	펜클로르포스(Fenchlorphos)	374	포클로르페뉴론(Forchlorfenuron)
118	펜클로림(Fencloirim)	375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119	펜퓨람(Fenfuram)	376	헥사코나졸(Hexaconazole)
120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377	헥사플루루론(Hexaflumuron)
121	페노뷰카브(Fenobucarb)	378	헥사지논(Hexazinone)
122	페노티오카브(Fenothiocarb)	379	이마잘릴(Imazalil)
123	페녹사닐(Fenoxanil)	380	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
124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381	이미시아포스(Imicyafos)
125	펜프로피모르프(Fenpropimorph)	382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126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383	이나벤파이드(Inabenfide)
127	펜손(Fenson)	384	이프펜카바존(Ipfencarbazone)
128	펜티온(Fenthion)	385	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129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386	아이소프로투론(Isoprotruron)
130	피프로닐(Fipronil)	387	아이속사벤(Isoxaben)
131	플람프로프-아이소프로필 (Flamprop-isopropyl)	388	아이속사티온(Isoxathion)
132	플루아크리피림(Fluacrypyrim)	389	레나실(Lenacil)
133	플루아지포프-부틸(Fluazifop-butyl)	390	레피멕틴(Lepimectin)
134	플루클로랄린(Fluchloralin)	391	리뉴론(Linuron)
135	플루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392	루페뉴론(Lufenuron)
136	플루엔설펜(Fluensulfone)	393	말라옥손(Malaoxon)
137	플루펜피르-에틸(Flufenpyr-ethyl)	394	말라티온(Malathion)
138	플루메트랄린(Flumetralin)	395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i)
139	플루미옥사진(Flumioxazin)	396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140	플루오피람(Fluopyram)	397	메카밤(Mecarbam)
141	플루오로클로리돈(Fluorochloridone)	398	메페나셋(Mefenacet)

연번	항목	연번	항목
142	플루킨코나졸(Fluquinconazole)	399	메펜트리플루코나졸 (Mefentrifluconazole)
143	플루실라졸(Flusilazole)	400	메포스폴란(Mephosfolan)
144	플루티아닐(Flutianil)	401	메소트리온(Mesotrione)
145	플루발리네이트(Fluvalinate)	402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146	플록사피록사드(Fluxapyroxad)	403	메타미포프(Metamifop)
147	포노포스(Fonofos)	404	메타미트론(Metamitron)
148	포모치온(Formothion)	405	메트코나졸(Metconazole)
149	할펜프록스(Halfenprox)	406	메타벤즈티아주론 (Methabenzthiazuron)
150	헵타클로르(Heptachlor)	407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151	헵테노포스(Heptenophos)	408	메티오카רב(Methiocarb)
152	헥시티아족스(Hexythiazox)	409	메토밀(Methomyl)
153	인다노판(Indanofan)	410	티오디카רב(Thiodicarb)
154	인독사카רב(Indoxacarb)	411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155	이프코나졸(Ipconazole)	412	메토브로뮤론(Metobromuron)
156	이프로벤포스(Iprobenfos)	413	메톨카רב(Metolcarb)
157	이프로디온(Iprodione)	414	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
158	이사조포스(Isazofos)	415	메트라페논(Metrafenone)
159	아이소펜포스(Isofenphos)	416	메빈포스(Mevinphos)
160	아이소펜포스-메틸 (Isfenphos-methyl)	417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161	아이소프로카רב(Isoprocarb)	418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162	아이소프로파린(Isopropalin)	419	네뷰론(Neburon)
163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420	니텐피람(Nitenpyram)
164	아이소피라잠(Isopyrazam)	421	노레아(노루론)(Norea(Noruron))
165	아이소티아닐(Isotianil)	422	노르플라라존(Norflurazon)
166	아이속사디펜-에틸(Isoxadifen-ethyl)	423	노발루론(Novaluron)
167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	424	오퓨레이스(Ofurace)
168	렙토포스(Leptophos)	425	오메토에이트(Omethoate)
169	메펜피르-디에틸(Mefenpyr-diethyl)	426	오리사스트로빈(Orysastrobin)
170	메파니피림(Mepanipirim)	427	오리잘린(Oryzalin)

연번	항목	연번	항목
171	메프로닐(Mepronil)	428	옥사디아길(Oxadiargyl)
172	메탈락실(Metalaxyl)	429	옥사밀(Oxamyl)
173	메티다티온(Methidathion)	430	옥사티아피프로린(Oxathiapiprolin)
174	메토프로트린(Methoprotryn)	431	옥사지클로메폰(Oxaziclomefone)
175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432	옥시카복신(Oxycarboxin)
176	메틸트리티온(Methyl trithion)	433	옥시데메톤메틸(Oxydemeton-methyl)
177	메톨라클로르(Metolachlor)	434	페뷰레이트(Pebulate)
178	메트리뷰진(Metribuzin)	435	펜사이큐론(Pencycuron)
179	엠지케이-264(MGK-264)	436	페녹솔람(Penoxsulam)
180	몰리네이트(Molinate)	437	펜메디팜(Phenmedipham)
181	모노리누론(Monolinuron)	438	페노트린(Phenothrin)
182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439	포레이트(Phorate)
183	니트로탈-아이소프로필 (Nitrothal-isopropyl)	440	포스폴란(Phosfolan)
184	노나클로르(Nonachlor)	441	폭심(Phoxim)
185	뉴아리몰(Nuarimol)	442	피카뷰트라졸스(Picarbutrazox)
186	오쏘페닐페놀(Ortho-phenyl phenol)	443	피콜리나펜(Picolinafen)
187	옥사디아존(Oxadiazon)	444	피페로포스(Piperophos)
188	옥사딕실(Oxadixyl)	445	프로베나졸(Probenazole)
189	옥시플루오르펜(Oxyfluorfen)	446	프로메카브(Promecarb)
190	파클로부트라졸(Paclubutrazol)	447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191	파라티온(Parathion)	448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192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449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193	펜코나졸(Penconazole)	450	프로폭서(Propoxur)
194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451	프로퀴나지드(Proquinazid)
195	펜플루펜(Penflufen)	452	프로설포카브(Prosulfocarb)
196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 (Pentachlorobenzonitrile)	453	피디플루메토펜(Pydiflumetofen)
197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454	피플루뷰마이드(Pyflubumide)
198	펜톡사존(Pentoxazone)	455	피메트로진(Pymetrozine)
199	퍼메트린(Permethrin)	456	피라클로닐(Pyraclonil)
200	퍼탄(Perthane)	457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연번	항목	연번	항목
201	펜토에이트(Phenthoate)	458	피라지플루미드(Pyraziflumid)
202	포스파미돈(Phosphamidon)	459	피라졸레이트(Pyrazolate)
203	포사론(Phosalone)	460	피라족시펜(Pyrazoxyfen)
204	포스멧(Phosmet)	461	피리벤카브(Pyribencarb)
205	프탈리드(Phthalide, Fthalide)	462	피리벤족심(Pyribenzoxim)
206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463	피리부티카브(Pyributicarb)
207	피페로닐부톡사이드 (Piperonyl butoxide)	464	피리다벤(Pyridaben)
208	피리미카브(Pirimicarb)	465	피리다펜티온(Pyridaphenthion)
209	피리미포스에틸(Pirimiphos-ethyl)	466	피리데이트(Pyridate)
210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467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211	프레틸라클로르(Pretilachlor)	468	피리미디펜(Pyrimidifen)
212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469	피리미설판(Pyrimisulfan)
213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470	피리오페논(Pyriofenone)
214	프로디아민(Prodiamine)	471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215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472	피로퀼론(Pyroquilon)
216	프로플루랄린(Profluralin)	473	퀴노클라민(Quinoclamine)
217	프로하드로자스몬(Prohydrojasmon)	474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218	프로메톤(Prometon)	475	세크뷰메톤(Secbumeton)
219	프로메트린(Prometryn)	476	세닥산(Sedaxane)
220	프로파클로르(Propachlor)	477	세톡시딤(Sethoxydim)
221	프로파닐(Propanil)	478	시마진(Simazine)
222	프로파진(Propazine)	479	스피네토람(Spinetoram)
223	프로페탐포스(Propetamphos)	480	스피노사드(Spinosad)
224	프로팜(Propham)	481	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
225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482	스피로테트라멧(Spirotetramat)
226	프로피소클로르(Propisochlor)	483	설펜트라존(Sulfentrazone)
227	프로피자마이드(Propyzamide)	484	설펜사플로르(Sulfoxaflor)
228	프로티오포스(Prothiofos)	485	설프로포스(Sulprofos)
229	피라카볼리드(Pyrcarbolid)	486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230	피라클로포스(Pyraclufos)	487	테부플로퀸(Tebufloquin)
231	피라플루펜에틸(Pyraflufen-ethyl)	488	테부티우론(Tebuthiuron)

연번	항목	연번	항목
232	피라조포스(Pyrazophos)	489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233	피리달릴(Pyridalyl)	490	테프랄록시딴(Tepraloxym)
234	피리페녹스(Pyrifenox)	491	터부포스(Terbufos)
235	피리프탈리드(Pyrifthalid)	492	터부틸라진(Terbuthylazine)
236	피리메타닐(Pyrimethanil)	493	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
237	피리미노박메틸(Pyriminobac-methyl)	494	테닐클로르(Thenylchlor)
238	퀴날포스(Quinalphos)	495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239	퀴녹시펜(Quinoxifen)	496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240	퀸토젠(Quintozene)	497	티아메톡삼(Thiamethoxam)
241	퀴잘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498	티아조피르(Thiazopyr)
242	실라플루오펜(Silaflofen)	499	티디아주론(Thidiazuron)
243	시메코나졸(Simeconazole)	500	티오벤카브(Thiobencarb)
244	시메트린(Simetryn)	501	티아디닐(Tiadinil)
245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502	톨펜피라드(Tolfenpyrad)
246	스피록사민(Spiroxamine)	503	트리아파몬(Triafamone)
247	설포텡(Sulfotep)	504	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248	테부코나졸(Tebuconazole)	505	트리뷰포스(Tribufos)
249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506	트리아이클라졸(Tricyclazole)
250	테부피림포스(Tebupirimfos)	507	트리플루무론(Triflumuron)
251	테크나젠(Tecnazene)	508	트리포린*(Triforine)
252	테플루트린(Tefluthrin)	509	트리티코나졸(Triticonazole)
253	터바실(Terbacil)	510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254	터부메톤(Terbumeton)	511	유니코나졸(Uniconazole)
255	터부트린(Terbutryn)	512	바미도티온(Vamidothion)
256	테트라클로르빈포스 (Tetrachlorvinphos)	513	버놀레이트(Vernolate)
257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514	엑스엠씨(XMC)



【공직자 부패·공익 신고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패·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부패·공익 신고” 코너



식품의약품안전처